

요양급여 청구시 필요서류 안내

필수 제출서류(공제급여 청구에 필요한 필수서류)

구분	서류명	발급처	주의사항
1	공제급여 청구서 (학교 직인 날인)	공제급여관리시스템 (www.schoolsafe.or.kr)	①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② '청구서 작성' 후 출력 ③ <u>학교 직인을 날인</u> (학교장 성함 옆)
2	'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' 원본 또는 '진료비 납입확인서' 원본 (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사본 인정)	병원	카드매출전표(카드 영수증), 현금영수증 불가 (반드시, 병원에서 왼쪽 서류명과 동일한 서류를 발급)
3	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 원본	약국	카드매출전표(카드 영수증), 현금영수증 불가 (반드시, 약국에서 왼쪽 서류명과 동일한 서류를 발급)
4	청구인 통장사본 (적금통장, 주택청약통장 불가능)	은행	[방법1] 통장 맨 앞장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함이 기재된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[방법2] 통장이 없다면, 은행 에서 '계좌개설 확인서'를 발급 받아 제출

★ 위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 한 후 다음 페이지에 나열된 상황에
해당하는 경우, '필요시 제출서류'를 추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필요시 제출서류(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,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)

구분	상 황	서 류 명	발 급 처
1	·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예)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상 '비급여'부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	진 료 비 세부내역서	병 원
2	· 청구액(치료비)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· 치료부위가 '치아'인 경우	진 단 서	병 원
3	· 청구액(치료비)이 50만원 이상인 경우	주민등록등본	주민센터(동사무소), 민원24(www.minwon.go.kr)
4	·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 (=보상금 수령인=통장 예금주)과 사고자가 함께 표시되지 않은 경우 · 청구인이 사고자의 부모가 아닌 친척(할머니, 고모 등)일 경우	가족관계증명서	주민센터(동사무소), 민원24(www.minwon.go.kr)
5	·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경우	MRI판독지	병 원
6	· 사고당일 병원에 가지 않아, 사고당일 진료 받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 예) 사고당일은 보건실에서 처치하고, 상태를 지켜보다가 다음날 병원에 간 경우	보건기록지 (=보건일지)	학교 보건실
7	· 위 6번 보건기록지(=보건일지)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예) 사고당일에 보건실, 병원 둘 다 가지 않아 사고일 증빙이 어려운 경우	초진기록지	본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방문한 병원
8	· 학교회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· 선생님 사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	대납확인서 (전북도교육청홈페이지 →행정정보→학교안전 공제회→게시판→제목 : 대납확인서 서식)	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또는 공제회에 서식 요청 (☎063-272-0807)

※ 위 서류 이외에도 공제급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.